

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6판

(2024년 변리사시험 대비용)

김영남 변리사

[2024년 상표법 1차 기본강의 계획]

상표법 기본강의에서 "법령과 판례를 모두 다룹니다."

1. 강의대본 제공
2. 리뷰테스트 제공 : 상표법OX 자료
3. 상표법 조문집 제공
4. 상표법 기본서 목차집 제공
5. 상표법 필기노트 제공
6. 후속무료강의 제공
7. 수강생 전용 질의응답 루트 관리

상표법 무료강의 안내

2024년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수강생분들께는 아래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무료강의 중 2차 강의는 2024년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구분	강의명	개강예정
1차	1차 상표법 OX 강의	23년 6월
	1차 상표법 기출강의 (22개년 진도별 기출풀이)	23년 7월
2차	2차 상표법 기본강의	24년 3월
	2차 기초GS	24년 3월

상표법 1차 기본강의가 포함된 각종 패키지에도 위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상표법 1차 기본강의가 포함된 패키지 List는 아래와 같습니다.

패키지 종류	특이사항
상표법 T-pass	4월 이내 등록시 인강 무제한 수강 선착순 20% 할인 중
기본강의 패키지 (민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특상디)	
Full 패키지 (민특상디)	인강 무제한 수강 선착순 20% 할인 중
Full 패키지 (특상디)	인강 무제한 수강 선착순 20% 할인 중

4월 이내에 등록 시 무제한 수강가능

2024년 대비
변리사스쿨 합격열차

T-PASS

상표법 김영남

체계적인 커리큘럼
1:1 맞춤학습 Q&A
수강기간 / PC·모바일제공

혜택1
수강료 할인
최대 73%

혜택2
현강/인강
중복수강

혜택3
인강
2배수

혜택4
수강기간
시험일까지

혜택5
모의고사 1회
응시권 제공

혜택6
23년 강의는 물론,
22년 강의도 제공

조기등록 추가혜택

수강료 20% 추가할인 / 인강 무제한 제공

★ 선착순 추가 할인

선착순 100명
20% 추가할인

★ 인강 무제한

조기등록자
(2023년 4월
30일까지 등록시)

T-PASS: 상표법 김영남

1,725,000 (약 60%할인) → 1,000,000원

선착순 100명!

1,000,000원 (추가 20%할인) → 800,000원

변리사시험 합격을 위한 완벽한 출발

민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패키지

변리사 1차 시험을 위한 필수강의만 모았다.
시작부터 변리사스쿨이 함께합니다.



	단과 수강료	패키지 수강료
민법 (류호권)	750,000원 → 300,000원 (수강기간 : 110일)	1,350,000 → 950,000원 (수강기간 : 250일)
특허법 (조현중)	400,000원 (수강기간 : 70일)	
상표법 (김영남)	400,000원 (수강기간 : 60일)	
디자인보호법 (김영남)	250,000원 (수강기간 : 30일)	

[기본강의 패키지 등록 혜택]

22년도
기본강의 제공
23년도 기본강의 종강전까지

강의수강료
15% 할인 쿠폰 * 4매
(최대 10만원)

변리사시험 합격을 위한 완벽한 출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패키지

변리사 1차 시험을 위한 필수강의만 모았다.
시작부터 변리사스쿨이 함께합니다.



	단과 수강료	패키지 수강료
특허법 (조현중)	400,000원 (수강기간 : 90일)	1,050,000 → 845,000원 (수강기간 : 250일)
상표법 (김영남)	400,000원 (수강기간 : 60일)	
디자인보호법 (김영남)	250,000원 (수강기간 : 30일)	

[기본강의 패키지 등록 혜택]

22년도
기본강의 제공
23년도 기본강의 종강전까지

강의수강료
15% 할인 쿠폰 * 4매
(최대 10만원)

2024년 대비 번리사시험을 위한 확실한 선택!

민/특/상/디

시험일까지 / 무제한수강 / 조기등록자 추가혜택

FULL 패키지

체계적인 커리큘럼 | 1:1 맞춤학습Q&A | 추가부담 0원 PC+모바일 모두제공

조기등록 추가혜택

선착순 100명

20% 추가할인 및 선행 학습용 인강 제공



22년 강의 제공

기다리지않고 선행학습
23년 강의 개강전



20% 추가 할인

FULL 패키지 얼리버드
20% 추가 할인



혜택1 최대55%! 수강료 할인	혜택2 제공강의 무제한수강	혜택3 수강기간 시험일까지	혜택4 모의고사 3회 응시권제공	혜택5 현강/인강 중복수강
-------------------------	----------------------	----------------------	-------------------------	----------------------

민/특/상/디 FULL 패키지

6,250,000 (55%할인) ⇒ 2,800,000원

선착순 100명!

2,800,000원 (추가 20%할인) → 2,240,000원

2024년 대비 번리사시험을 위한 확실한 선택!

신입재산권법

시험일까지 / 무제한수강 / 조기등록자 추가혜택

FULL 패키지

체계적인 커리큘럼 | 1:1 맞춤학습Q&A | 추가부담 0원 PC+모바일 모두제공

조기등록 추가혜택

선착순 100명

20% 추가할인 및 선행 학습용 인강 제공



22년 강의 제공

기다리지않고 선행학습
23년 강의 개강전



20% 추가 할인

FULL 패키지 얼리버드
20% 추가 할인



혜택1 최대55%! 수강료 할인	혜택2 제공강의 무제한수강	혜택3 수강기간 시험일까지	혜택4 모의고사 3회 응시권제공	혜택5 현강/인강 중복수강
-------------------------	----------------------	----------------------	-------------------------	----------------------

신입재산권법 FULL 패키지

3,725,000 (39%할인) ⇒ 2,300,000원

선착순 100명!

2,300,000원 (추가 20%할인) → 1,840,000원

제1편 : 총칙

제1장 : 상표법의 목적(제1조)

I. 목적

II. 내용

1. 상표를 보호
2.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
3. 산업발전에 이바지
4. 수요자의 이익 보호

제2장 : 상표의 기능

- I.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의 목적
- II. 기능의 종류
 - 1. 자타상품식별기능
 - 2. 출처표시기능
 - 3. 품질보증기능
 - 4. 광고선전기능
 - 5. 기타기능

제3장 : 상표의 개념

- I. 제2조 제1항 제1호
- II. 내용
 - 1.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 2. 식별하기 위하여
 - 3. 사용하는
 - 4. 표장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V. 관련문제
 - 1. 상표 이외의 권리의 경우
 - 2.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 SONY(判例)

제 4 장 : 사용의사확인제도

- I. 의의 및 취지
- II. 등록주의와 2012년 개정법의 취지
 - 1. 등록주의
 - 2. 2012년 개정법의 취지
- III. 사용의사의 판단방법(判例)
- IV.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V. 관련문제
 - 1. 지정서비스업의 영위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 탑플란트(判例)
 - 2. 사용의사 제도의 운영방식
 - (1)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
 - (2) 출원인의 증명
 - (3) 심사관의 결정

제5장 : 상표의 사용

- I. 제2조 제1항 제11호
 - 1. 표시행위(가목)
 - 2. 유통행위(나목)
 - 3. 광고행위(다목)
 - (1) 광고행위
 - (2)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3)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4) 거래서류
- II. 제2조 제2항

제6장 :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I. 상표의 사용
II. '상표의 기능 발휘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III.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2. 기능을 설명하거나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경우 : Sony(判例)
3. 디자인적 사용의 경우
4. 창작물을 수록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5. 비교광고로서의 광고문구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경우
6. 상품이 특정되지 않은 기업이미지 광고 등에 표시된 상표
IV.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상품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1. 제품의 포장용 상자 등에 표시된 상표
2. 완성품에 표시된 상표 : ice coolup
3.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표시된 상표
V. 도메인이름
1.도메인 이름 및 문제점
2.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인용상표로서의 지위
3.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4.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방법

제7장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I. 개념
1. 상표의 동일
2. 상표의 유사
II. 유사판단의 기준
1. 주체적 기준
2. 시기적 기준
III. 유사판단의 방법
1. 일반적인 판단방법
2. 전체관찰의 원칙
3. 요부관찰의 법리
(1) 개념
(2) 요부결정방법
① 일반적인 판단방법
②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경우
③ 다수등록/출원공고된 경우
(3) 요부가 없는 경우
(4) 분리관찰과의 관계(判例)
4. 분리관찰
(1) 개념
(2) 올바른 전체관찰을 위한 수단
(3) 분리관찰이 불허되는 경우

5. 객관적 관찰

6. 이격적 관찰

IV. 관련문제

1. 문자상표의 경우

2. 입체상표의 경우

3. 도형상표의 경우

4. 구체적인 출처혼동의 고려가부

(1) 문제점

(2) 학설

① 일반적 출처혼동설

② 구체적 출처혼동설

(3) 判例

① 무표심판 관련(Rolex 判例)

② 침해금지청구 관련(ORACLE 判例)

(4) 판례에 대한 비판 견해

① 무효심판

② 침해금지

(5) 검토

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에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고려(Saboo 判例)

(1) 원심

(2) 대법원

제8장 :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I. 개념

II. 유사판단

1. 상품 vs 상품

2. 서비스 vs 서비스

3. 상품 vs 서비스

III. 기타

1.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2.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제1장 : 공통

제2편 : 상표등록요건

I. 제33조 ~ 제35조

II. 제33조

제2장 : 상표의 식별력

I. 식별력의 개념
II. 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분류
1. 일반명칭표장
2. 기술적 표장(=성질표시표장)
3. 암시적 표장(=시사적표장)
4. 임의선택표장
5. 조어표장

제3장 : 제33조 제1항 제1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
(1) 개념
(2) 관련 판례
① 사전 등에서 보통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② 전국적 범위에서 보통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3. '만'으로 된 상표
III.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IV. 관련문제
1. 보통명칭화
(1) 의의
(2) 판단방법
(3) 보통명칭화의 유형
(4) 보통명칭화의 방지책
(5) 취급

제4장 : 제33조 제1항 제2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III.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IV. 관련문제
1. 보통명칭과 구별

제5장 : 제33조 제1항 제3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그 상품의 성질표시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3. '만'으로 된 상표
III. 판단방법
1. 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2. 상표의 의미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IV.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V. 관련문제
1. 결합상표의 경우
2. 원재료 표시인지 여부
3.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1) 전문 의약품인 경우
(2) 일반 의약품인 경우
(3) 참고판례
4. 예외적인 판례

제6장 : 제33조 제1항 제4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1) 현저한 지리적 명칭
 - (2) 지정상품과의 관계
 - (3)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
 - (4)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등이 아닌 경우
 - (5) 스키장의 명칭인 “용평”이 지리적 명칭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6) 지리적 명칭이 우연히 타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
 - (7) 외국어로 구성된 표장의 경우
 - (8) 관광지의 경우
 - (9) 문화재의 경우
 - (10) 옛지명의 경우
 - 2. ‘만’으로 된 상표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V. 관련문제
 -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경우(American University)
 - (1) 다수의견
 - (2) 별개의견 1
 - (3) 별개의견 2

제7장 : 제33조 제1항 제5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 3. ‘만’으로 된 상표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제8장 : 제33조 제1항 제6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간단하고 혼한 표장
2. '만'으로 된 상표
III. 판단방법
IV.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V. 관련문제
1. 유사판단시 고려여부
(1) 문제점
(2) 判例
(3) 검토
2. 문자상표의 경우
(1) 1차의 한글 또는 2자 이내의 알파벳의 경우
(2) 1차의 한글과 1차의 영문자가 결합한 경우
(3) 1차의 한글, 2차의 외국문자가 기타 식별력 없는 문자와 결합한 경우
3. 숫자상표의 경우
4. 도형상표의 경우
5. 기타

제9장 : 제33조 제1항 제7호

I. 의의 및 취지
II. 규정의 성격
1. 일반규정
2. 보충적 규정
III. 판단방법
IV. 유형
1.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것
2.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
V.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제10장 : 제33조 제2항

I. 의의 및 취지
II. 적용대상
1.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문제점
(2) 학설
① 적극설
② 소극설
(3) 判例
(4) 검토(절충설)
2.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제 제6호
3. 제33조 제1항 제7호
III. 판단기준
1. 주체적 기준
2. 시기적 기준
3. 지역적 기준
4. 인식도
IV. 판단방법
V. 사용상표 및 사용상품에 한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
1. 동일성 범위에서 인정
2. K2. 判例
3. 경남대학교 判例

4. 몬테소리, 단박대출 判例
VI. 입증책임

제11장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 I. 출원인 이외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II.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제34조 제1항 제12호와의 관계
 - 1. 문제점
 - 2. 학설 및 判例
 - 3. 검토
- III.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 효력
- IV.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유사판단시 요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 1. 문제점
 - 2. 判例(알파)
 - 3. 判例에 대한 비판 견해
 - 4. 검토
- V. 상표 등록 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 1. 문제점
 - 2. 학설
 - (1) 제90조 적용 긍정설(적극설)
 - (2) 제90조 적용 부정설(소극설)
 - 3. 判例(재능교육)
 - 4. 검토
- VI. 상표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 1. 원시적 무효사유의 하자 치유여부
 - 2. 유사판단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1) 문제점
- (2) 학설
 - ① 요부설
 - ② 제한적 요부설
 - ③ 비요부설
- (3) 判例
 - ① 종래判例(A(6))
 - ② 최근判例(New Balance)
- (4) 검토
- 3.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여부

제12장 : 제34조 제1항 제1호

제13장 : 제34조 제1항 제2호

- I. 가목
 - 1. 의의 및 취지
 - 2. 내용
- II. 나목
- III. 다목
 - 1. 의의 및 취지
 - 2. 내용
- IV. 라목
- V. 마목
 - 1. 의의 및 취지
 - 2. 내용
- V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
 - 2. 거짓표시 등
- III. 판단방법
- IV.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제14장 : 제34조 제1항 제3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 2.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
 - 3.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4. 적용의 예외
- III. 상품과의 관계
- IV.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제15장 : 제34조 제1항 제4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유형
 - 1. '상표 그 자체'가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V. 판단방법
- V. 관련문제
 - 1. 출원이나 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
 - 2.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3. 타인의 명성
 - 4. 보충적 적용여부
 - 5. 저작권
 - (1) 저작권 비침해의 경우
 - (2) 저작권 침해의 경우w
 - 6. 법인의 명칭 등(심사기준)
 - 7.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 8. 증명표장등록출원
 - 9. 타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제16장 : 제34조 제1항 제5호

제17장 : 제34조 제1항 제6호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2.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상표3. 적용의 예외 <p>III. 상표법상 취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판단시점2. 위반시 취급
--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저명성2.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3. 적용의 예외 <p>III. 상표법상 취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판단시점2. 위반시 취급

제18장 : 제34조 제1항 제7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1) 선출원
(2) 타인
(3) 등록상표
① 상표등록출원시에 출원상표가 등록결정시 전에 등록된 경우
② 선등록상표에 불사용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3.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III.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IV. 관련문제
1. 부분거절제도와 관계

제19장 : 제34조 제1항 제8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 선출원
(2) 타인
(3)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① 상표등록출원일 당시에 출원상표가 등록결정시 전에 등록된 경우
② 선등록상표에 불사용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3.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
III.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IV. 관련문제
1. 선출원 등록상표 vs 후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2. 선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vs 후출원 상표

제20장 : 제34조 제1항 제9호

제21장 : 제34조 제1항 제10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 (1) 타인
 - (2) 주지상표
 - 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3.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 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3.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제22장 :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
 - 2.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 (1) 타인
 - (2) 判例(현대)
 - 3. 혼동을 일으키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 혼동
 - (2) 적용범위
 - ① 상표
 - ② 상품
 - (3) 판단방법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V. 관련문제
 - 1.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

제23장 :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
 - 2.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 3.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V. 관련문제
 - 1.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

제24장 :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 I. 의의 및 취지
- II. 유형
 - 1. 상품품질에 대한 오인
 - 2. 상품자체에 대한 오인
- III. 판단방법
 - 1. 일반적인 판단방법(NECTAR 判例)
 - 2. 부기적인 부분에 적용
 - 3. 절대적 품질표시
 - 4. 상품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닌 경우
- IV.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제25장 :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 I. 의의 및 취지
- II. 유형
- III. 순수 수요자 기만
 - 1.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자
 - 2. 국가명 또는 지명을 포함
 - 3. 국가(도시)명과 연도표시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 4. 지정상품이 국가(도시)에서 유명하고, 상표에 해당 국가(도시)명이 포함될 경우
 - 5. 법인의 명칭 등
 - 6. 널리 알려진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
- IV. 출처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 1. 적용요건
 - 2. 선사용상표 권리자는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함
 - (1) 타인
 - (2) 선사용상표 권리자
 - 3.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
 - (1)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용도 등에 한정된 경우
 - (2) 선사용상표에 특정인의 인지도 내지 명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 (3)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서 알려져야 하는지 여부
 - 4. 약의의 선사용상표(判例)
- V.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VI. 관련문제

- 1.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
- 2. 증명표장에 있어서 특칙
- 3. 제34조 제1항 제9호와의 관계

제26장 : 제34조 제1항 제13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 1.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
- 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3.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 하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
 - (1) 유형
 - (2) 판단방법
 - (3) 지정상품과 관계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IV. 관련문제

- 1. 선사용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1) 원심
 - (2) 대법원
- 2.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제27장 : 제34조 제1항 제14호

제28장 : 제34조 제1항 제15호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3.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 <p>III. 상표법상 취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판단시점2. 위반시 취급
--

<p>I. 의의 및 취지</p> <p>II. 판단방법</p> <p>III. 상표법상 취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판단시점2. 위반시 취급

제29장 : 제34조 제1항 제16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 2.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
 - 3. 적용의 예외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V. 관련문제
 - 1.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 2.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
 - 3. 지리적 표시가 보호 중단되는 경우 등

제30장: 제34조 제1항 제17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1.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정명칭
 - 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3. 상품이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
- III.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IV. 관련문제
 - 1. 품종보호권자가 출원한 경우

제31장: 제34조 제1항 제18호

제32장: 제34조 제1항 제19호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3.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p>III. 상표법상 취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가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2.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p>III. 상표법상 취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p>IV. 관련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 표시와 상품 종류가 결합된 경우

제33장 : 제34조 제1항 제20호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p>1.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p> <p>2.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있을 것</p> <p>3.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p> <p>4.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p> <p>III. 상표법상 취급</p> <p>1. 판단시점</p> <p>2. 위반시 취급</p> <p>IV. 관련문제</p> <p>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p>

제34장 : 제34조 제1항 제21호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p>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p> <p>(1) 조약당사국</p> <p>(2)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p> <p>(3) 계약관계, 거래관계, 그 밖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p> <p>2.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p> <p>3.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p> <p>4.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p> <p>III. 상표법상 취급</p> <p>1. 판단시점</p> <p>2. 위반시 취급</p>
--

제35장 : 제34조 제3항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
2.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취소심판이 청구
3. 그 청구일 이후에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
(1) 제34조 제3항 각호
(2)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3) 취소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경우
4.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
(1)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출원
(2) 취소심결의 확정 전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① 判例
② 검토
(3) 심판청구일 전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① 判例
② 검토
5.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III.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제36장 : 제35조

I. 의의 및 취지
II. 내용
1. 다른 날에 출원
2. 동일한 날에 출원
3. 선원의 지위
(1) 제35조 제3항
(2)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포기 등에 의하여 장래로 소멸
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5. 동일인 간에 적용여부
III. 상표법상 취급
1. 판단시점
2. 위반시 취급
IV. 관련문제
1. 선출원주의의 예외 및 보완
(1) 예외
(2) 보완 :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

제1장 :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I. 출원일 및 출원일 불인정 사유

II. 절차보완

1. 절차보완 명령
2. 절차보완서 제출
3. 절차보완을 한 경우
4. 절차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III. 관련문제

1.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25조)
 - (1) 의의
 - (2) 대상

제2장 : 1상표1출원주의 등(제3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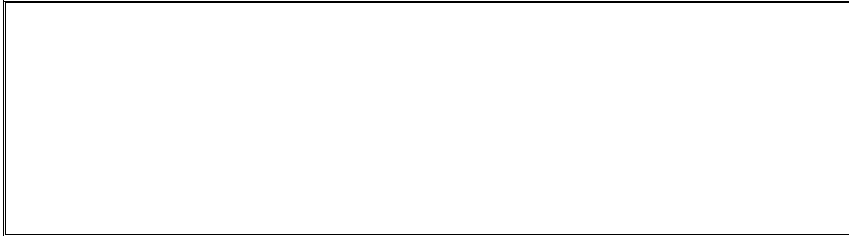
제3장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 I. 의의 및 취지
- II. 상표
- III. 상품
 - 1. 상품의 명칭
 - 2. 상품류 구분
 - 3. 포괄명칭
 - 4. 서비스
 - (1) 도매업, 소매업
 - (2) 백화점업, 편의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 IV. 상표법상 취급
 - 1. 판단시점
 - 2. 위반시 취급
- V. 위반의 예

- I. 심사순위
- II. 우선심사제도
 - 1. 신청인
 - (1) 출원인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
 - (2)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 3. 예외
 - 4. 절차

제4장 : 절차계속신청제도

제5장 : 보정



- I. 보정의 의의·취지 및 제한의 필요성
- II. 절차보정(제39조)
 - 1. 의의
 - 2. 요건
 - (1) 주체
 - (2) 시기
 - (3) 대상
 - 3. 효과
 - (1) 절차보정이 있는 경우
 - (2) 절차보정이 없는 경우(제18조)
- III. 실체보정 : 자진보정(제40조 내지 제42조)
 - 1.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과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1)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제40조 보정)
 - (2)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제41조 보정)
 - 2. 보정의 효과
 - (1) 적법
 - (2) 부적법
 - ① 시기 위반의 경우
 - ② 내용 위반의 경우(제42조)
 - (3) 설정등록 후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제40조 보정

② 제41조 보정

(4) 요지변경

IV. 실체보정 : 직권보정(제59조)

1. 의의 및 취지
2. 대상
3. 통지
4. 의견서 제출
5. 의견서 제출의 효과

제6장 : 변경출원(제44조)

I. 의의 및 취지

II. 태양

III. 요건

1. 주체

2. 객체

3. 시기

IV. 절차

V. 효과

1. 적법

(1) 출원일 소급효

(2) 원출원 취하간주

2. 부적법

제7장 : 분할출원(제45조)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주체
2. 객체
3. 시기
III. 절차
IV. 효과
1. 적법
(1) 출원일 소급효
(2) 분할출원의 독립성
2. 부적법
V. 관련문제
1. 재분할출원
2. 출원의 분할이전
3. 상표권이 분할(제94조)
4. 상표권의 분할이전(제93조)
5. 원출원이 제46조/제47조를 주장한 경우
(1) 원출원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① 우선권 주장간주 및 증명서류 제출간주(제45조 제3항)
② 우선권 주장강주의 취하(제45조 제4항)
(2) 원출원이 출원 시의 특례를 주장한 경우(제45조 제5항)

제 8 장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 46 조)

I. 의의 및 취지
II. 유형
1. 전부우선권
2. 부분우선권
2. 복합우선권
III. 요건
1. 제1국 출원의 요건
2. 제2국 출원의 요건
(1)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의 출원일 것
(2)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출원할 것
① 동일한 상표
② 동일한 상품
3. 시기
IV. 절차
1. 우선권 주장
2. 우선권 주장의 증명서류
V. 효과
1. 적법
(1) 제35조
(2) 제34조 등

2. 부적법

VI. 관련문제

1. 출원 시의 특례

2.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1) 우선권 주장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변경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

① 분할출원의 경우

② 변경출원의 경우

(2) 우선권 주장 하지 않은 원출원을 기초로 분할·변경출원에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

제9장 :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주체

2. 객체

(1) 상표 및 상품의 동일성

(2) 박람회

3. 시기

III. 절차

1. 출원 시의 특례 주장

2. 출원 시의 특례의 증명서류

IV. 효과

1. 적법

2. 부적법

V. 우선권 주장

제10장 : 출원공고제도(제57조)

I. 의의 및 취지
II. 절차
1. 출원공고의 결정(제57조 제1항)
(1)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하는 이유
(2)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
① 분할출원(제57조 제1항 제1호)
②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결(제57조 제1항 제2호)
2. 결정등본송달 및 출원공고(제57조 제2항)
3. 열람에 제공(제57조 제3항)
III. 관련문제
1. 등록공고
2. 출원공개제도

제11장 :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I. 의의 및 취지
II. 법적성질
III. 요건
1.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의 사용
2. 출원인의 서면에 의한 경고
3. 경고 후 제3자의 계속적 사용
4. 출원인의 업무상 손실 발생
IV. 행사
V. 내용(제58조 제5항)
1. 상표법 준용
2. 민법 준용
VI. 소멸
VII. 관련문제
1. 제58조 제5항에서 준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1) 제90조(효력제한사유)
(2) 제99조(선사용권)
(3)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4) 제112조(고의추정)

제12장 : 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주체
2. 객체
3. 시기
III. 절차
1. 이의신청서 제출
2.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의 보정
3. 부분송달 및 답변서 제출기회의 부여(제66조 제1항)
IV. 심사
1. 심사관합의체(제62조)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제63조)
3. 둘 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병합 또는 분리 심사(제64조)
V. 결정
1. 각하결정
2. 이의결정
(1) 이의결정의 시기
(2) 이의결정의 방식
(3) 이의신청의 경합
(4)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제67조)
(5) 이의결정등본의 송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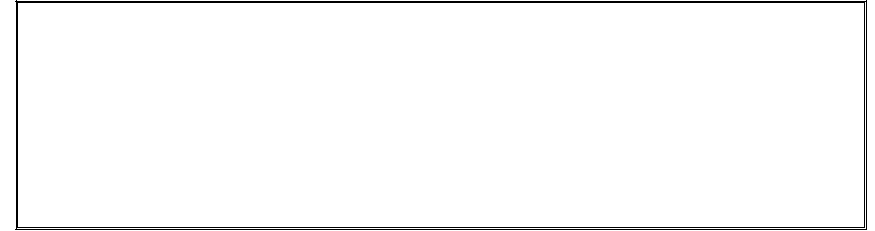
VI. 효과
1. 이의결정
2. 등록여부결정

제13장 : 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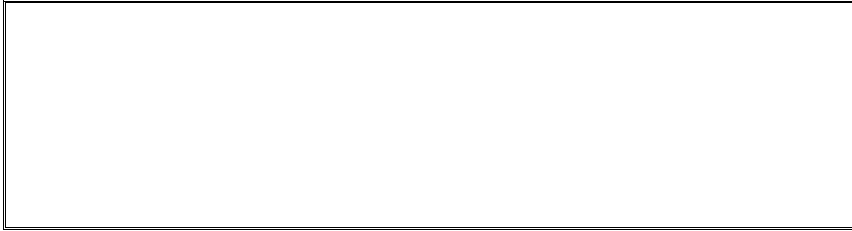
제14장 : 재심사의 청구 또는 직권재심사

I. 부분거절결정

1. 도입의 취지
2. 의견제출통지 및 부분거절결정
3.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결정



제15장 : 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제1장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제4편 : 상표권

- I. 의의 및 취지
- II. 법적성질
 - 1. 학설
 - 2. 判例
 - 3. 검토
- III. 갱신등록의 요건 및 위반시 취급
 - 1. 요건
 - (1) 주체적 요건
 - (2) 시기적 요건
 - 2. 위반시 취급
- IV. 절차
 - 1. 갱신등록신청서 제출
 -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심사
 - 3.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 4. 갱신등록료의 분할납부
- V. 효과
 - 1.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의 효과
 - 2.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효과
- VI.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제118조)
 - 1. 무효사유
 - 2. 방식

3. 효과

VII. 관련문제

1. 2회 갱신등록 된 등록상표의 1회 갱신등록에 대한 갱신등록무효심판청구

(1) 1회 갱신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가부

① 判例

② 검토

(2)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判例

② 검토

2. C-Tree 사건

(1) 소멸등록이나 회복등록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判例)

(2) 특허청장이 갱신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判例)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취하(제13조)

제2장 :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주체

2. 객체

3. 시기

III. 절차

1. 출원서 제출

2. 심사

(1) 준용규정(제88조 제2항)

(2)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제87조)

① 거절결정

②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 제출

③ 절차계속신청

3. 등록

IV. 효과

1. 존속기간

2. 추가등록의 독자성

V. 지정상품추가등록 무효심판(제117조)

1. 무효사유

2. 방식

3. 효과

제3장 :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주체
2. 객체
(1) 신청의 대상
(2) 원상표권의 존재
(3) 상품
3. 시기
III. 절차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2. 심사
(1) 준용규정(제212조)
(2)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제210조)
① 거절결정
②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 제출
③ 절차계속신청
(3) 등록결정
IV. 효과
1. 전환등록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 소멸(제213조)
(1) 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상품
V.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제214조)
1. 무효사유
2. 방식
3. 효과

제4장 : 상표권의 효력

<p>I. 효력의 범위</p> <p>1. 시간적 범위</p> <p>2. 객관적 범위</p> <p>3. 지역적 범위</p> <p>II. 적극적 효력</p> <p>1. 독점적 사용권</p> <p>(1) 내용</p> <p>(2)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등록상표의 금지청구권까지 상실되는지 여부</p> <p>2. 수익·처분권 등</p> <p>(1) 내용</p> <p>(2) 상표권의 이전제한 등</p> <p>①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등(제93조)</p> <p>② 상표권이 포기(제102조 제1항)</p> <p>③ 상표 이외의 권리의 경우(제95조 제2항, 제97조 제5항)</p> <p>III. 소극적 효력</p> <p>1. 사용금지효</p> <p>(1) 내용</p> <p>① 상표권</p> <p>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p> <p>(2) 제한</p> <p>① 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제77조)</p>

<p>②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제160조)</p> <p>③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p> <p>④ 기타</p> <p>2. 등록배제효</p>
--

제5장 : 권리의 소진

- I. 의의 및 취지
- II. 권리소진된 상품을 가공 또는 수선하는 경우(判例)
- III. 관련 판례
 - 1. 권리소진을 부정한 사례 (후지필름 判例)
 - 2. 권리소진을 긍정한 사례 (사기도박카드 判例)
 - 3.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判例)

제6장 : 진정상품병행수입

- I. 의의
- II. 허용요건
- III. 허용요건
 - 1. 진정상품
 - 2. 출처의 동일
 - 3. 품질의 동일
- IV. 관련문제
 - 1. 광고·선전의 허용여부
 - (1)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
 - (2)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
 - 2. 소분행위의 허용여부
 - (1) 문제점
 - (2) 학설
 - (3) 判例
 - (4) 검토
 - 3. 수입상품이 판매지 제한약정에 위반된 경우(判例)
 - 4. 구체적인 유형의 연습

제7장 : 권리남용

<p>I. 침해금지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진한커피 判例)</p> <p>II. 침해로 얻은 신용을 기초로 한 비침해 항변(카타나 判例)</p> <p> 1. 권리남용의 항변</p> <p> 2. 후행등록상표가 후발선사용상표로 인해서 소멸된 경우 비침해 항변</p> <p>III. 부정경쟁행위와 권리남용</p> <p> 1. 등록된 주지상표의 침해</p> <p> 2. 상표권자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등(사임당 判例)</p> <p> (1) 문제점</p> <p> (2)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判例)</p> <p> 3. 지역적 주지표지</p> <p>IV.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하이우드 判例)</p> <p> 1. 공정력</p> <p> 2. 권리남용의 항변</p> <p> (1) 判例</p> <p> (2) 비판견해</p> <p> 3. 법원이 등록무효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p> <p>V. 기타</p> <p> 1.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p> <p> 2.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양도인의 권리행사</p> <p> 3. 외국권리자의 상표를 등록 받은 후 권리행사</p>
--

제8장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p>I. 결합상표</p> <p>II. 확대적용</p> <p> 1. 判例</p> <p> 2. 判例에 대한 비판 견해</p> <p>III. 제90조 각항 각호의 관계</p>

제9장 :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자기의 성명·상호 등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 등
2.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1) 2016년 개정법
(2)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그 판단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② 옥류관 사안
(3) 출처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경우
3. 부정경쟁이 목적이 없을 것(제90조 제3항)
III. 관련문제
1. 입증책임
2. 회사표시부분을 생략한 경우
3.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
(1) 등록상표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① 학설
② 判例
③ 검토
(2) 신용획득 경위 및 지정상품에 대한 주지성
4. 설정등록 전부터 사용하는 경우

제10장 : 제90조 제1항 제2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 등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1) 의미
(2) 판단방법
III. 관련문제
1.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경우
2. 제33조 제1항 제3호와의 관계

제11장 : 제90조 제1항 제3호

- I. 의의 및 취지
- II. 관련문제

제12장 : 제90조 제1항 제4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 III. 관련문제(코리아리서치센터 判例)
 -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2.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도안화 등이 된 경우

제13장 : 제90조 제1항 제5호

- I. 의의 및 취지
- II. 관련문제
 - 1. 제34조 제1항 제15호와 차이점

제14장 : 제90조 제2항

- I. 제9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II. 제90조 제2항 제3호
- III. 제90조 제2항 제4호

제15장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p>I.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제92조 제1항)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제92조 제2항) <p>II.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권의 제한 2. 금지권의 제한 3. 통상사용권허여심판 4. 상표등록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제16장 : 특허권 등이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p>I.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p> <p>II.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권자 2. 사용권의 범위 3. 대가 4. 혼동방지청구권 5. 사용권 이전

제17장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p>I.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p> <p>1. 제99조 제1항</p> <p>2. 제99조 제2항</p> <p>II. 내용</p> <p>1. 부정경쟁의 목적</p> <p>2. 사용자</p> <p>3. 사용권이 범위</p> <p>4. 대가</p> <p>5. 혼동방지청구권</p> <p>III. 관련문제</p> <p>1. 선사용권(제99조 제2항)의 삭제론</p> <p>2. 등록 전 선사용자의 지위</p> <p>3. 사용권 이전</p> <p>(1) 제99조 제1항</p> <p>(2) 제99조 제2항</p>

제18장 : 상표권의 이전(제93조)

<p>I. 의의</p> <p>II. 태양</p> <p>1. 발생범위에 따른 분류</p> <p>2. 이전범위에 따른 분류</p> <p>III. 효과</p> <p>1. 하자승계</p> <p>2. 부수권리</p> <p>3. 절차효력</p> <p>4. 절차속행</p> <p>IV. 제한</p> <p>1. 제한의 필요성</p> <p>2. 제한사유</p> <p>(1) 지정상품의 분할 이전(제93조 제1항)</p> <p>(2)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제93조 제2항)</p> <p>(3) 업무표장권(제93조 제4항)</p> <p>(4)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라목 단서, 제34조 제1항 제3호 단서(제93조 제5항)</p> <p>(5) 단체표장(제93조 제6항)</p> <p>(6) 증명표장(제93조 제7항)</p> <p>3. 위반시 취급</p> <p>V. 청산법인</p> <p>VI. 상표권 분할 후 이전</p> <p>7.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判例)</p>

제19장 : 상표권의 공유

제20장 : 사용권 제도

I. 의의
II. 법적성질
III. 제한
1. 지분양도 및 질권설정
2. 사용권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4. 심판청구
5. 심결취소소송
(1) 공유자 중 1인의 원고적격
(2) 공유자 중 1인의 피고적격
6. 지분의 포기

I. 의의, 성격
II. 발생
III. 내용
IV. 이전 등
V. 소멸
VI. 등록
7. 상표권자에 대한 권리
8. 의무
9. 업무표장 등

제21장 : 질권

- I. 질권이 대상
- II. 질권의 설정방법
- III. 질권의 효력
- IV. 질권의 등록
 - 1. 상표권에 대한 질권
 - 2.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에 대한 질권
- V.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제22장 : 상표권의 소멸

- I. 상속인
- II. 법인의 소멸
- III. 기타소멸사유

제23장 : 상표권의 침해

제24장 :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I. 의의

II. 상표권 침해의 특수성

III. 침해의 유형

1. 전용권의 침해
2. 금지권의 침해
3. 침해로 보는 행위
 - (1)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제108조 제1항)
 -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제108조 제2항)
4.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判例)

IV. 침해요건

1. 유효한 권리
2. 상표의 사용
3. 동일 또는 유사범위내 사용
4.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 (1) 사용권
 - ① 정당한 권원
 - ②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2) 제89조 본문
 - ① 정당한 권원
 - ② 수개의 등록상표를 조합한 경우
5. 효력제한
6. 기타

I. 민사적 구제수단

1. 침해금지청구
 - (1) 의의
 - (2) 청구권자
 - (3) 관련문제
2. 임시조치
3. 손해배상청구 : 후술
4. 법정손해배상청구 : 후술
5. 신용회복청구
6. 가처분

II. 형사적 구제수단

1. 침해죄
2. 양벌규정
3. 몰수

III. 기타 벌칙규정

1. 비밀유지명령위반
2. 위증죄
3. 거짓표시죄
4. 거짓행위죄
5. 과태로

제25장 : 손해배상의 청구

I. 의의

II. 요건

1. 권리를 침해할 것
2.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1) 고의추정(제112조)
 - (2) 과실추정(남선알미늄 判例)
3. 손해가 발생할 것
4. 침해와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III. 손해액

1. 손해액의 산정
2. 손해액의 추정
 - (1) 제110조 제3항
 - (2) 침해자의 이익액
 - ① 학설
 - ② 判例
 - (3) 손해발생
 - ① 손해발생이 없는 경우
 - ② 손해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
 - (4)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 (5) 침해된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判例)
3.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1) 제110조 제4항 및 제5항
- (2) 법적성질
 - ① 학설
 - ② 구법상 判例
 - ③ 검토
- (3) 탑플란트 사건
 - ① 判例
 - ② 소결
- (4) 과실상계의 적용여부
4. 재량에 의한 인정
 - (1) 제110조 제6항
 - (2) 손해 발생
5. 고의 침해의 경우

제26장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I. 의의 및 취지
II. 판단방법(判例)
III. 관련문제
1. 제109조와 관계
(1) 선택적 행사
(2) 청구의 변경
2. 제110조 제6항과의 차이점

제26장 : 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I. 의의 및 취지
II. 비밀유지명령에서 제외되는 경우
III. 절차
IV.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
2. 취소신청 재판
3. 취소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4. 취소신청 재판의 효력
5.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 조치
V.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1. 소송기록 열람 등 청구 통지
2. 열람 제한
3. 열람 가능
VI.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1장 : 공통

제5편 : 심판 및 소송

I. 심리 및 심결

1. 방식심리
2. 부분송달 등
3. 심리방식
4. 부적법한 심판청구
5. 심결
6. 불복

II. 국선대리인 선임

III. 심판청구서의 보정

1. 요지변경
2. 요지변경의 예외(제125조 제2항 각호, 제126조 제2항 각호)
 - (1)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을 보정하는 경우
 - (2)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

IV. 심판청구의 취하(제148조)

제2장 : 일사부재리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2. 누구든지
3. 같은 사실
4. 같은 증거
(1) 확정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判例)
(2) 확정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判例)
5. 동일심판
III. 관련문제
1. 일사부재리에 대한 판단시점 및 각하심결에 대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 문제의 소재
(2) 일사부재리의 판단시점(判例)
(3)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① 判例
② 검토
2. 불사용취소심판(후술)
3. 권리범위확인심판
4.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제3장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I. 의의 및 취지
II. 대상

제4장 :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I. 의의 및 취지
II. 법적성질
III. 심리범위
1. 전면적 재심리
2.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
IV. 심결의 확정
1. 인용심결 확정
2. 기각심결 확정
V. 보조참가의 가부
1. 문제점
2. 判例

제5장 : 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I. 의의 및 취지
II. 무효사유
1. 원시적 무효사유
2. 후발적 무효사유
III. 청구
1. 주체
(1) 청구인
(2) 피청구인
2. 객체
3. 시기
IV. 심결의 확정
V. 관련문제
1. 일부무효(判例)
2.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제6장 : 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I. 청구기간
1. 제척기간
2. 상표권 소멸
II. 청구의 범위
III. 입증책임
IV. 취소사유의 소멸
V. 당사자
VI. 취소심결의 확정
VII. 심판장의 통지의무

제7장 : 제119조 제1항 제1호

I. 의의 및 취지
II. 요건
1. 상표권자의 사용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2) 상표권자가 직접 등록상표에 대한 변형을 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 부정사용 책임의 승계
2. 고의
3. 유사범위 사용
(1) 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동일성과 구별(判例)
(2)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사용 한 경우(判例)
(3)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일부만 등록한 후 계속 사용(判例)
(4) 등록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의 경우(색채만의 상표 제외)
4. 품질오인 및 출처혼동의 우려
(1) 혼동이 생길 염려
(2) 광의의 혼동 포함
(3) 품질오인의 경우
(4) 대상상표 적격
① 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건, 상표법상 미등록 상표인 경우
② 대상상표의 인식도
(5) 대상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6) 혼동유무의 판단방법

제8장 : 제119조 제1항 제2호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p>1.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사용</p> <p>2. 동일 또는 유사범위 내 사용일 것</p> <p>3.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 또는 상품에 대한 출처혼동</p> <p>(1) 품질 오인</p> <p>(2) 타인의 상품과 혼동</p> <p>(3)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p> <p>4.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p> <p>III. 관련문제</p> <p>1.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120조)</p>
--

제9장 : 제119조 제1항 제3호

<p>I. 의의 및 취지</p> <p>II. 요건</p> <p>1.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불사용</p> <p>(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p> <p>(2) 미등록 사용권자의 사용</p> <p>① 설정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p> <p>② 합의만으로 사용권 설정</p> <p>③ 상표권 양수인의 사용중지 촉구이후 사용</p> <p>④ 미등록전용사용권자</p> <p>(3) 제3자에 의해서 유통 또는 광고되는 경우</p> <p>① 학설</p> <p>② 判例</p> <p>③ 검토</p> <p>(4) OEM 방식</p> <p>(5) 상표권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의 사용</p> <p>2.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p> <p>3.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p> <p>(1) 등록상표의 사용 - 동일성</p> <p>① 거래통념상 동일성</p> <p>② 등록상표의 변경사용</p> <p>③ 등록상표의 일부사용 - 영문과 그 한글 음역의 결합상표의 경우</p>
--

- ④ 등록상표의 일부사용 - 결합상표의 각 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⑤ 등록상표에 부가사용 - 동일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⑥ 등록상표에 부가사용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한 경우
- (2) 지정상품에 사용 - 동일성
- (3) 등록상표의 사용 - 제2조 제1항 제11호
 - ①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
 - ② 상품에 관한 광고가 아닌 경우
 - ③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보온냉수통(判例)
 - ④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 - 백남준 미술관(判例)
- (4) 기타
 - ① 등록상표의 식별력
 - ② 등록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의 경우(색채만의 상표 제외)
- 4.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
 - (1) 심판청구일 기준
 - (2) 상표권 이전이 있는 경우
- 5.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 (2) OEM 방식
 - (3) 치외법권 지역
 - (4) 국내 수요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
 - ① 문제점
 - ② 判例(Sea World)
- 6. 정당한 사용

- (1) 정당한 사용
- (2) 판단방법
 - ①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判例)
 - ② 저작권 침해(후술_저작권)
- Ⅲ. 입증책임의 전환 및 완화
 - 1. 입증책임의 전환 및 완화(제119조제3항)
 - 2. 포괄명칭의 등록 후 개별상품 일부에만 사용
- Ⅳ. 관련문제
 - 1. 자기의 상품 출처로 사용
 - 2.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WCO 判例
 - 3. 취소심결 확정지 효과
 - 4. 일부청구
 - 5. 일부심결 및 일부취하
 - 6. 심판청구이익
 - (1) 문제점
 - (2) 지정상품이나 심판청구일을 달리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이익(判例)
 - 7. 중복심판청구
 - (1) 문제점
 - (2) 判例
 - 8. 일사부재리
 - (1) 문제점
 - (2) 判例
 - 9. 등록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출처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10장 : 제119조 제1항 제4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제93조와 비교

- (1) 判例
 - (2) 판례에 대한 비판 견해
 - (3) 검토
10. 사해행위취소소송
- (1) 문제점
 - (2) 상표권 양수인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여부
 - (3) 상표권 양수인의 사용을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 심판 계속 중 다른 상품이 추가등록이 된 경우
12.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 전부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1장 : 제119조 제1항 제5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1. 상표권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될 것
 2. 그 중 1인이 자기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것
 3.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
 4. 수요자에게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을 일으키게 할 것

제12장 : 제119조 제1항 제6호

- I. 의의 및 취지
- II. 요건
1. 제9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 (1) 제92조 제2항에 해당
 - (2) 등록상표의 사용일 것
 2.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등록일부터 5년내 취소심판을 청구할 것
 - (1) 심판청구인
 - (2) 심판청구기간

제13장 : 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제14장 : 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I. 제119조 제1항 제7호

II. 제119조 제1항 제8호

III. 제119조 제1항 제9호

I. 심판단계

II. 심결취소소송단계

III. 제척기간

1. 문제점

2.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는 무효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3.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무효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IV. 불사용취소심판

제15장 :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 I. 의의 및 취지
- II. 유형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III.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질 및 심리범위
 - 1. 성질
 - 2. 심리범위
- IV.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 1. 주체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① 청구인 및 피청구인
 - ② 피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2. 객체
 - 3. 시기
 - 4. 절차
 - (1) 심판청구서 및 확인대상상표, 사용상품
 - (2) 확인대상표장의 특정정도
 - (3) 확인대상표장의 보정
 - ① 심판단계에서의 보정
 - ②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의 보정

- V.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 및 심결
 - 1. 직권심리 및 그 한계
 - 2. 확정심결의 효과
 - (1) 권리범위에 대한 공적인 확인
 - (2) 일사부재리(제150조) 효력의 발생

제16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제17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 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I. 문제점
II. 判例
1. 소수의견
2. 다수의견
III. 검토

I. 문제점
II. 학설
III. 判例
1. 일부판례
2. 주류적인 판례
IV. 검토

제18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리범위

- 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선사용권(제99조 제1항)
- II.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선사용권(제99조 제1항)
- III. 권리범위확인심판 - 제90조 제1항 제1호

제19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 민사재판과 관계

- I. 확정심결의 기속력
- II. 유력한 증거
- III. 심판청구이익
 - 1. 문제점
 - 2. 判例
 - (1) 원심
 - (2) 대법원
 - 3. 검토
- IV.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1. 문제점
 - 2. 判例
 - (1) 원심
 - (2) 대법원
 - 3. 검토

제20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 vs 권리

- 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1. 判例
 - 2. 검토
- II.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1. 判例
 - 2. 검토
- III. 관련문제
 - 1. 등록상표인 확인대상상표의 의미
 - (1) 거래통념상 동일성
 - (2) 화미미정 - 동일성과 독립성
 - (3) 리바이네스 - 영문과 그 한글음역이 결합된 상표
 - 2. 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된 경우
 - (1) 심판원의 조치
 - (2) 법원의 조치
 - ① 심판원이 인용심결을 한 경우
 - ② 심판원이 기각심결을 한 경우
 - 3. 소송단계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된 경우
 - (1) 심판원이 인용심결한 경우
 - ① 문제점
 - ② 학설
 - ③ 판례

- ④ 검토
 - (2) 심판원이 기각심결한 경우

제21장 : 심결취소소송

I. 관할
II. 제소기간
1. 제163조 제3항
2. 제16조 제4호 적용여부
III. 소의 이익
1.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된 경우 소의 이익
2.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소의 이익
IV. 자백 또는 의제자백

제22장 : 심결취소소송 : 당사자

I. 원고 및 피고
1. 원고
2. 피고
II.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1. 원고적격: 공유자 중 1인의 원고적격
(1) 문제점
(2) 학설
(3) 判例
2. 원고적격: 공유자 전원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각하심결된 경우
(1) 문제점
(2) 判例
3. 피고적격: 공유자 중 1인의 피고적격
III. 공동 심판청구한 경우
1. 원고적격 : 공동 심판청구인 중 1인의 원고적격
2. 피고적격 : 공동 심판청구인 중 1인의 피고적격
IV. 권리의 승계와 원고적격
1. 일반승계
2. 특정승계
(1) 학설
(2) 判例
3. 특정승계 : 심결 후 특정승계

제23장 : 심결취소소송 : 판단시점

제24장 : 심결취소소송 : 심리범위

- I.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시점
- II. 소의 본안에 대한 판단시점
 - 1. 심결시
 - 2. 심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1) 소급효가 없는 경우
 - (2) 소급효가 있는 경우
 - ① 제35조
 - ② 제34조 제1항 제7호

- I. 문제의 소재
- II. 학설
 - 1. 무제한설
 - 2. 제한설
- III. 判例
 - 1. 당사자계 심판
 - 2. 결정계 심판
- IV. 검토

제25장 : 심결취소소송 : 기속력

I. 의의 및 취지

II. 성질

III. 범위

1.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

2. 취소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1장 : 국제출원의 개요

제6편 :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I. 개요

II. 장점

1. 국제출원 단계

(1) 간편한 출원절차

(2) 비용절감

2. 국제등록 이후 단계

(1) 권리취득여부의 명확

(2) 지정국의 추가 가능(사후지정)

(3) 상표관리의 일원화

제2장 : 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 I. 개요
- II. 요건
 - 1.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 (1)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필수
 - (2) 표장의 동일성
 -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 2. 본국관청을 통한 출원
 - 3. 출원인 적격
 - 4. 사용언어
 - 5. 수수료
 - 6. 지정국의 지정
- III. 국제등록일
- IV. 국제등록의 효과
- V. 국제등록
 - 1. 감축
 - 2. 포기
 - 3. 취소
- VI. 사후지정
 - 1. 개념
 - 2. 요건
 - 3. 절차

- 4. 사후지정일
- 5. 사후지정등록
- 6. 보호기간
- VII. 명의변경
 - 1. 요건
 - 2. 절차
 - 3. 효과
- VIII. 존속기간의 갱신
- IX. 국제등록의 종속성
- X. 본국관청의 절차

제3장 : 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 I. 개념
- II. 국제상표등록출원
 - 1. 개념
 - 2. 출원일
 - 3. 출원인 성명 등
- III. 업무표장의 특례(제181조)
- IV.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제182조)
 - 1. 제181조 제1항
 - 2. 제181조 제2항
 - 3. 제181조 제3항
- V.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제183조)
 - 1. 개요
 - 2.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대체신청
 - 4. 기타
 - (1) 제38조 제1항
 - (2) 국제등록상표가 복수인 경우
- VI.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제184조)
 - 1. 명의변경의 신고
 - 2. 명의변경의 효과
- VII. 보정의 특례(제185조)

- VIII. 출원의 변경의 특례(제186조)
- IX. 출원의 분할의 특례(제188조)
- X.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자의 특례(제188조)
- X I.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제189조)
 - 1. 출원 시 특례(제189조 제1항)
 - 2. 우선심사의 특례(제189조 제2항)
- X II.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제190조)
 - 1. 국제사무국을 경유(제190조 제1항)
 - 2. 절차계속신청제도(제190조 제2항)
- X III. 출원공고의 특례(제191조)
- X IV.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제192조)
- X V.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제193조)
 - 1. 상표등록결정의 특례(제193조 제1항)
 - 2. 직권보정의 특례(제193조 제2항)
- X VI. 재심사 청구의 특례(제193조의2)
- X VII. 등록료 등의 특례(제194조)
- X VIII.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제195조)
- X IX. 상표원부예의 등록의 특례(제192조)
 - 1. 국내등록부(제196조 제1항)
 - 2. 국제등록부(제196조 제2항)
- X X.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제197조)
- X X I.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제198조)
- X X II.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특례(제199조)

X XⅢ. 상표권 분할의 특례(제200조)

X XⅣ.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제201조)

1. 국제상표등록부
2. 국내상표등록부
3. 상표권의 이전

X XⅤ.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제202조)

1. 국제상표등록출원(제202조 제1항)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제202조 제2항)
3. 효력발생시기(제202조 제3항)

X XⅥ. 상표권 포기의 특례(제203조)

1. 상표권의 포기
2. 사용권 등의 포기

X XⅦ. 무효심판 등의 특례(제204조)

제4장 :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I.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제205조)

II. 마드리드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제206조)

III. 심사의 특례(제207조)

IV. 제척기간의 특례(제208조)

제1장 : 입체상표

제7편 : 비전형상표

I. 의의 및 도입의 취지

II. 등록요건

1. 자타상품식별력

(1) 제33조 제1항 제3호

(2)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이 결합된 경우

① 문제의 소재

② 학설

③ 判例(인공 고관절용 볼)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반드시 요구되는지 여부

② 상품 등에 기호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비아그라 判例)

2. 기능성(제34조 제1항 제15호)

(1) 의의 및 취지

(2) 입체적 형상이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3) 판단방법

III. 출원

IV. 심사

1. 상표가 불명확한 경우

2. 상표로서 구성 및 태양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유사판단

4. 요지변경

V. 등록

1. 입체상표권의 효력

2. 입체상표권의 효력제한

(1) 제90조 제1항 제2호

(2) 제90조 제1항 제3호

(3) 제90조 제1항 제5호

(4) 제90조 제2항 제1호

제2장 : 색채상표

I. 기호 등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

1. 의의 및 도입의 취지

2. 심사

(1) 자타상품식별력

(2) 유사판단

(3) 요지변경

3. 등록

(1) 개요

(2)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제225조)

① 취지

② 전제

③ 취급

II. 색채만의 상표

1. 의의 및 도입의 취지

2. 등록요건

(1) 자타상품식별력

(2) 기능성(제34조 제1항 제15호)

① 제34조 제1항 제15호

②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③ 판단방법

3. 출원

4. 심사

- (1) 상표가 불명확한 경우
- (2) 상표로서 구성 및 태양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3) 유사판단
- (4) 요지변경

5. 등록

- (1) 효력
- (2) 효력제한
 - ① 제90조 제1항 제2호
 - ② 제90조 제1항 제5호

제3장 :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I. 의의 및 도입취지

II. 등록요건

III. 출원

IV. 심사

- 1. 상표가 불명확한 경우
- 2. 상표로서 구성 및 태양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3. 유사판단
 - (1) 홀로그램상표
 - (2) 동작상표
- 4. 요지변경

V. 등록

- 1. 효력
- 2. 효력제한

제4장 : 위치상표

I. 의의
II. 구성요소
1. 표장
2. 지정상품의 형상
3. 표장의 위치
III. 등록요건
1. 식별력
2. 기능성
IV. 출원
V. 심사
1. 상표가 불명확한 경우
2. 상표로서 구성 및 태양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유사판단
VI. 등록

제5장 : 비시각적 상표

I. 의의 및 도입의 취지
II. 표장의 특징
1. 시각적 표현으로 특정(심사기준)
2. 시각적 표현의 기재 불비에 대한 처리
III. 등록요건
1. 식별력
(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요구
(2) 제33조 제1항 제7호 등
2. 기능성
3. 기타
IV. 등록
1. 상표에 관한 설명
2. 시각적 표현
3. 상표견본
V. 심사
1. 유사판단
2. 요지변경
VI. 등록
1. 보호범위
2. 효력
3. 효력제한

제 8 편 : 상표 이외의 권리

제1장 : 단체표장

- I. 의의 및 도입취지
- II.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
- III. 등록요건
 - 1. 정의규정
 - 2. 출원인 적격
 - 3. 특유 거절이유
 - (1) 정의규정 위반
 - (2) 출원인 적격 위반
 - (3) 정관기재불비
- IV. 출원
 - 1. 정관 첨부
 - 2. 변경출원
- V. 등록
 - 1. 적극적 효력(사용주체)
 - 2. 소극적 효력(권리주체)
- VI. 특유의 무효사유
- VII. 특유의 제한 및 취소사유
 - 1. 이전제한
 - 2. 사용권 및 질권 설정 제한
 - 3. 특유의 취소사유
 - (1) 제119조 제1항 제4호
 - (2) 제119조 제1항 제7호

제2장 : 증명표장

- I. 의의 및 도입취지
- II.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
- III. 특징
 - 1. 목적
 - 2. 사용주체
- IV. 등록요건
 - 1. 정의규정
 - 2. 출원인 적격
 - 3. 특유 거절이유
 - (1) 정의규정 위반
 - (2) 출원인 적격 위반
 - (3) 정관기재불비
 - (4)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 V. 출원
 - 1. 정관 또는 규약의 첨부
 - 2. 변경출원의 인정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
- VI. 등록
 - 1. 적극적 효력(사용주체)
 - 2. 소극적 효력(권리주체)
- VII. 특유의 무효사유

- VIII. 특유의 제한 및 취소사유
 - 1. 이전제한
 - 2. 사용권 및 질권설정 제한
 - 3. 특유의 취소사유
 - (1) 제119조 제1항 제4호
 - (2) 제119조 제1항 제9호
- IX. 관련문제
 - 1. 제34조 제1항 제4호
 - 2.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 제1항 제12호
 - 3.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마목

제3장 : 지리적 표시

I. 의의
II. 성립요건
1. 상품
2.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3.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4.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III.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1. 의의
2. 내용
(1) 제35조
(2) 제34조 제1항 제8호, 제10호
(3) 제34조 제1항 제14호
(4)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의 사용금지청구 불가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90조 제1항 제3호)
②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2항 제1호)
(5) 혼동방지의무 부과

제4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I. 의의 및 도입의 취지
II.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
III. 등록요건
1. 정의규정
(1)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2)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 경우
2. 출원인 적격
3. 제33조 제3항
4. 제34조 제1항 제8호
5. 미등록 지리적 표시
(1) 제34조 제1항 제10호
(2) 제34조 제1항 제14호
6. 제35조
7. 특유 거절이유
(1) 정의규정 위반
(2) 출원인 적격 위반
(3) 단체가입불허
(4) 정관기재불비
IV. 출원
1. 정관 첨부 및 지리적 표시 입증서류의 제출
2. 변경출원(제44조 제1항)

- 3. 요지변경의 예외
- V. 등록
- VI. 특유의 무효사유
 - 1. 원시적 무효사유
 - 2. 후발적 무효사유
- VII. 특유의 취소사유
 - 1. 단체표장 특유의 취소사유와 동일(제119조 제1항 제4호, 제7호)
 -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유의 취소사유(제119조 제1항 제8호)
- VIII. 관련문제
 - 1. 이전제한
 - 2. 사용권 및 질권 설정 제한
 - 3. 제34조 제3항
 - 4.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제5장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I. 의의 및 도입의 취지
- II. 상표 및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
- III. 등록요건
 - 1. 정의규정
 - (1)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 (2)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 경우
 - 2. 출원인 적격
 - 3. 제33조 내지 제35조
 - 4. 특유 거절이유
 - (1) 정의규정 위반
 - (2) 출원인 적격 위반
 - (3) 정관기재불비
 - (4)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 IV. 출원
 - 1. 정관 또는 규약의 첨부 및 증명능력, 지리적 표시 입증서류의 제출
 - 2. 변경출원(제44조 제1항)
 - 3. 지정상품
 - 4. 요지변경의 예외
- V. 등록
- VI. 특유의 무효사유
 - 1. 원시적 무효사유

2. 후발적 무효사유

VII. 특유의 취소사유

1.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9호
2. 제119조 제1항 제8호 나목

VIII. 관련문제

1. 이전제한, 사용권 및 질권설정의 제한
2. 제34조 제3항
3.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제6장 : 업무표장

I. 의의 및 취지

II.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

III. 등록요건

1. 정의규정
2. 출원인 적격
3. 제34조 제1항 제7호

IV. 출원

1. 업무 경영사실 증명
2. 변경출원
3. 업무지정

V. 등록

VI. 제한

제1장 : 기능성 원리

제9편 : 기타쟁점

I. 기능성 원리

II. 기능성 종류

1. 내용적인 측면(실용적 기능성과 심미적 기능성)
2. 효과적인 측면(법률상 기능성과 사실상 기능성)

III. 판단방법

1. 입체상표
2. 색채·색채 조합
3. 소리·냄새

IV. 상표법상 기능성 원리의 적용

1. 등록요건

- (1) 제34조 제1항 제15호
- (2) 입체적 형상 등이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① 判例

② 검토

2. 등록 후 효력제한(제90조 제1항 제5호)

제2장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I. 개념
II. 보호의 필요성
III. 성립요건 判例
IV. 보호방안
1. 상표법에 의한 보호
(1) 입체상표
(2) 색채상표 및 비시각적 상표의 보호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2) 상품형태 모방행위(제2조 제1호 자목)
(3)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 제1호 파목)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4. 특허법에 의한 보호
5.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제3장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I. 의의
II. 상표권과의 차이
III.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IV. 현행법상의 보호방안
1. 문제점
2. 민법에 의한 보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1조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1) 등록배제효(제34조 제1항 제2호, 제6호)
(2) 상표권 확보를 통한 보호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제4장 : 창작물 수록상품

- I. 등록가능성(지정상품이 창작물 수록상품인 경우)
 - 1. 제33조 제1항 제3호
 - 2. 제34조 제1항 제12호
- II. 침해성립여부(사용상품이 창작물 수록상품인 경우)
 - 1. 상표의 사용
 - (1) 부정 判例
 - (2) 긍정 判例
 - 2. 제90조
- III. 창작물 수록상품의 제호가 출처표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신용의 귀속주체

제5장 : 저작권과의 관계

- I. 등록가능성
 - 1. 제34조 제1항 제4호
 - (1) 저작권 비침해의 경우
 - (2) 저작권 침해의 경우
 - 2.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 II. 등록상표의 사용과 저작권 침해
 - 1.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제한
 - 2. 저작권 침해와 불사용취소심판
 - (1) 判例
 - (2) 검토

제6장 : 저명상표의 희석화

I. 의의
II. 희석화의 유형
1. 상표약화
2. 상표손상
III. 희석화 이론의 법적인 적용
1. 상표법
(1) 사용금지효
(2) 등록배제효
①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② 제34조 제1항 제13호
2. 부정경쟁방지법

제7장 :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I.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II. 장단점
III. 등록주의의 보완
1. 등록주의 채택 및 사용주의적 요소 가미
2. 상표등록 및 등록 유지를 위한 규정
(1) 제3조
(2) 제119조 제1항 제3호
3. 사용에 의해서 형성된 사실상태 보호를 위한 규정
(1) 제33조 제2항
(2) 제3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4호
(3) 제46조
(4) 제58조
(5) 제99조
(6) 제111조
4.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배제 규정
5. 부정경쟁방지법

제8장 : 매타태그

- I. 의의
- II. 문제의 소재
- III.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
 - 1. 학설
 - 2. 검토
- IV.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장 : 오픈마켓

- I. 문제점
- II. 상표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判例)
- III.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1.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 2. 적절한 조치의무

제10장 : 부정경쟁방지법

I. 의의

II. 도입취지 및 규정의 성격

III. 판단방법

1. 성과 등의 유형

2. 성과 등의 판단방법

IV.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수단

1. 트레이드 드레스

2. 判例

V.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타목과 동시적용 여부